

1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

문 의

코로나19중수본 대국민지원1팀 (☎ 044-202-3183)
충청북도 복지정책과 (☎ 043-220-3032)

- ❖ 코로나19 관련 환자·접촉자 등의 적극적 신고 및 치료 협조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 지원
- ❖ 입원·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

● 지원기간

- 2020. 2 ~ 12월

● 지원대상

- 보건소에서 발부한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, 감염병예방법의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

※ 지원제외 대상

- ① “국가” · “공공기관” · “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”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
- ② 유럽 입국자(3.22.0시 이후), 미국 입국자(3.27.0시 이후) 중 단순 격리자
- ③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는 내·외국인, 격리사유(전수격리, 확진자·접촉자 격리) 등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

● 지원내용

- 지원기준 : 가구원 수 기준

(단위 : 원, 월)

구성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이상
지원금액	454,900	774,700	1,002,400	1,230,000	1,457,500

-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: 1개월분 지원
- 14일 미만 :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